
취업계 운영 계획(안)

1. 관련 근거

- 가. 「학칙」 제41조 (학업성적)
- 나. 「학사에 관한 규정」 제31조 (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)
- 다. 「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」 제10조 (장기결석자의 관리)

2. 목적

- 가. 조기 취업한 학생의 일과 학업 병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
- 나. 취·창업 학생의 고용 유지 및 창업 활동 정착을 위한 학사 편의 제공

3. 적용 대상

-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등록 및 재학 중인 자)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가. 산업체 등에 취업한 자 또는 창업한 자
- 나. 취업계 적용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
- 다.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

4. 조기 취(창)업 인정 및 불인정 범위

가. 취업자

- 1) 인정: 국내외 산업체 정규직, 계약직, 인턴직(단기, 체험형, 채용전환형 등 고용형태 무관), 위촉직 프리랜서
- 2) 불인정: 직계존속이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으로의 취업, 일용직, 아르바이트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「근로기준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(초단시간근로자)

나. 창업자

1) 인정

- 가) 창업주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'1인 가구 생계급여(해당 연도 기준)'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
- 나)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

2) 불인정

- 가) 본인이 창업하지 않고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을 인수·상속한 경우
- 나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 - (가) 일반유흥주점업
 - (나) 무도유흥주점업
 - (다)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 - (라) 그 외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

5. 운영 방법

- 가. 신청 학생은 '취업계 신청서' 등 관련 서류를 제출 기한(최초 신청 시와 학기 종료 시)에 맞추어 단과대학교학팀/학과 사무실에 제출
- 나. 단과대학교학팀/학과는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한 후 교무처에 공문으로 제출

다. 교무처는 해당 서류를 검토 후 승인하고, 시스템에 적용하여 '총 수업시수의 1/4 이상 결석에 따른 자동 F등급 부여'가 되지 않도록 처리

6. 제출서류 안내

가. 제출기한

1) 최초 신청: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

※ 학기 중 취업할 경우 취업 시작일 기준 20일 이내

2) 학기 종료(유지 확인): 기말고사 시작 7일 전 ~ 1일 전까지 제출

※ 기말고사 시작 7일 전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유효함(이전 발급 서류 불인정)

나. 제출서류

1) 취업자

구분	대상	제출서류	내용
신청 시	전체	취업계 신청서	■ 붙임 양식 참조
		재직증명서	■ 발급일, 재직기간, 직인 필수(학기 개시 후 발급)
		근로계약서 사본	■ 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
		4대 사회보험 가입 공적증명서	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(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내역 필수) ※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는 보험가입 증빙 서류 제출
		가족관계증명서	■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학기 개시 후 발급)
	해당자	취업비자 사본	■ 국외 취업자의 경우 제출
		각종 증명서	■ 세무사, 회계사, 공무원 등 합격자는 합격증명서, 발령통지서, 연수/교육/수습 참가확인서 또는 이수증 제출(기간 명시)
종료 시	전체	재직증명서	■ 학기 종료 시 재직증명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■ 기말고사 시작 7일 전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

2) 창업자

구분	대상	제출서류	내용
신청 시	전체	취업계 신청서	■ 붙임 양식 참조
		사업자등록증명(원)	■ 학기 개시 후 발급
		가족관계증명서	■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학기 개시 후 발급)
	일반 창업자	세금신고 관련 증명서	■ 신청학기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■ 1년 이상 사업자 - 개인 일반(간이)과세자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- 개인 면세사업자: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- 법인 사업자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) ■ 1년 미만 사업자 -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(매입·매출세금계산서, 카드매출실적조회서 등) - 학기 시작 2개월 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■ 매출 증빙 서류에는 사업장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
	사업 선정자	선정 확인서	■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등 증빙 서류 제출 (K-Startup 홈페이지에서 선정 확인서 출력하여 제출 가능)
		협약서 사본	■ 사업 선정 후 지원금 수령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사본 제출
종료 시	전체	사업자등록증명(원)	■ 기말고사 시작 7일 전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
	일반 창업자	세금신고 관련 증명서	■ 조기 취(창)업 인정 기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(매입·매출세금계산서, 카드매출실적조회서 등) ■ 증빙 서류에는 사업장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■ 기말고사 시작 7일 전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
	사업 선정자	지원사업 수행 확인 서류	■ 지원사업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지원금 수령 내역 등) ■ 기말고사 시작 7일 전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

7. 취업계 미인정 교과목: 계절수업, e러닝 및 사회봉사, 현장실습, 임상실습, 학점교류 교과목

8. 특기사항

가. 조기 취(창)업자의 취업계 적용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에 한함

※ 취업 확정 후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, 취업에 따른 성적 평가 방법(정상 시험, 과제 대체 등)을 안내받아야 함

나. 모든 과목에 취업계를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, 담당교수의 판단하에 취업계 적용이 가능함

다. 취업계는 1/4 이상 결석 시 자동 F 처리되는 것을 면하는 제도임. 해당 기간 중 결석한 수업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결석으로 처리가 되고, 학기 중 평가(고사, 과제 등) 의무에서 제외되지는 않음

라. 성적 평가와 관련하여 출석 점수가 있는 강의의 경우 결석한 시수만큼 출석 점수가 차감될 수 있으며,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, 과제 대체, 리포트 대체 등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성적 평가 방법 대로 정상 이행하지 않을 시 F 등급을 받을 수 있음

마.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선정된 창업자는 세금신고 관련 증명서를 면제함.

바. 일반 창업자는 학기 중 추가 신청이 불가하며, 학기 초(개시 후 20일 이내) 신청자만 인정함

사. 학기 중 취업자는 취업 시작일 기준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

아. 학기 중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선정자는 선정일 기준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

자. 중도 퇴직, 폐업 등으로 취업계 종료 사유 발생 즉시 단과대학교학팀/학과 사무실에 관련 서류 (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, 퇴직증명서, 폐업사실증명원 등)를 제출하고 수업에 정상 출석 해야 함

차. 소정 기한 내 서류 미제출, 조기 취(창)업 불인정 범위 해당, 허위/위조/변조된 서류 확인 시 취업계 적용이 취소됨

카. 인정 범위, 제출서류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협조해야 함